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500

발의연월일: 2025. 1. 14.

발 의 자:윤재옥・김기웅・권영진

김정재 · 최수진 · 김태호

엄태영 • 이인선 • 김성원

김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 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, 검사 중 발생한 결함은 자동차정 비업소에서 수리토록 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 록 검사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.

그러나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미흡한 차량관리 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안 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을 통해 차량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의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2(자동차의 점검) ①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또는 차량중량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소유자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자동차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해당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.

제66조제1항제13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거짓으로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한 경우 제84조제4항제15호의4 및 제15호의5를 각각 제15호의5 및 제15호의6 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5호의5(종전의 제15호의4) 단서 중 "제15호의5"를 "제15호의6"으로 한다.

15의4.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기점검에 관한 적용례) 제3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 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<u> <신 설></u> | 제36조의2(자동차의 점검) ① |
| |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 |
| | 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 |
| | 송사업용 자동차 중 국토교통 |
| | 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|
| | 또는 차량중량 이상의 화물자 |
| | 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소유자 |
| | 는 일정한 차령이 경과한 경우 |
| |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|
| | 따라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. |
| | ② 제1항의 자동차 소유자는 |
| |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해당 |
| |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|
| |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|
| |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|
| | 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. |
| 제66조(사업의 취소ㆍ정지) ① 시 | 제66조(사업의 취소·정지) ① |
| 장・군수・구청장은 자동차관 | |
| 리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| |
|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 | |
| 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| |
|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| |
|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| |

있다. 다만, 제1호, 제12호라목 (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로 한정한다),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~ 12. (생략)
- 13.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<신 설>

나. ~ 차. (생 략)

14. ~ 16. (생략)

② ~ ⑥ (생 략)

제84조(과태료) ① ~ ③ (생 자략)

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1. ~ 15의3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15의4.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 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

| 1. ~ 12. (현행과 같음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3 |
| |
| |
| 가. 거짓으로 제36조의2제1항 |
| 에 따른 정기점검을 한 경 |
| <u> </u> |
| 나. ~ 차. (현행과 같음) |
| 14. ~ 16. (현행과 같음) |
|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|
| 제84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|
| 같음) |
| 4 |
| |
| |
| 1. ~ 15의3. (현행과 같음) |
| |
| <u>15의4.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</u> |
| 15의4.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|

자. 다만, <u>제15호의5</u>에 해당하 는 자는 제외한다.

<u>15의5.</u> (생략)

16. ~ 24. (생 략)

⑤ · ⑥ (생 략)

-. -----<u>제15호의6</u>-----

<u>15의6.</u> (현행 제15호의5와 같음)

16. ~ 24. (현행과 같음)

⑤ · ⑥ (현행과 같음)